2019. 08 Vol.1

P&B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27건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3건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3건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5건
국방위원회	방위산업발전법안 외 61건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1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외 9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7건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6건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22건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9건

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P&B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SAMPLE

P&B Report 구성 소개

주요 구성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별첨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SAMPLE

Contents

Ⅰ. 소위원회

08 **1. 상정 법률안 목록**

17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17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8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19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20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2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4인)

22 6)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의원 등 122인)

23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4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3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5 9)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1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외교통일위원회

27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인석 의원 등 113인)

국방위원회

29 13)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의원 등 10인)

31 14)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32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3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4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5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36 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37 1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21인)

38 1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0인)

39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원회

40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42 22-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43 2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

SAMPLE

44 **3. 법률안 비교·분석**
4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7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II. 상임위원회

50 **1. 상정 법률안 목록**

65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65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67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68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69 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9인)
70 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71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72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73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5 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76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77 1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육위원회
78 1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9 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80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82 1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3 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84 1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1인)
85 1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7 19-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88 19-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6인)
89 2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91 20-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9인)

SAMPLE

Contents

92 2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93 2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95 2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96 2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97 2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98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99 24-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100 24-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101 2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3인)
102 2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103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0인)
104 2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3인)
105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106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07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08 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09 3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0인)
110 3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3인)
111 3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12 3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3인)
113 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14 **3. 법률안 비교·분석**
114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II. 국회본회의

118 **1. 상정 법률안 목록**

120 별첨. 1. 7월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134 2. 8월 본회의 통과 법률안 목록
137 3. 7월 국회 일정표
143 4. 용어해설

SAMPLE

B&B Report

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3. 법률안 비교 · 분석

SAMPLE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재정건전화법안
		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진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PECIAL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19. 한국수출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2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8.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9. 교육시설기본법안
		10.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환경노동위원회

1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9024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영진·서형수·설훈·이철희·조정식·신창현·변재일·강병원·김상희·전현희·유승희·김태년·서영교·송옥주·홍영표·안규백·정성호 의원(20인)

무소속 강길부 의원(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9. 03. 08. 제안
2019. 03. 11. 상임위 회부

소위원회
2019. 03. 18. 상정/축조심사
2019. 03. 19. 상정
2019. 03. 21. 상정
2019. 04. 03. 상정/축조심사
2019. 07. 15. 상정/축조심사

관련 법률안

- [20131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 [20131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8인)
- [20147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1인)
- [20162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 [20163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2인)
- [20164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 [20166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등 13인)
- [20185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20190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실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 때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감소 방지를 도모하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신설).

나. 사용자가 3개월 초과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라.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제4항 신설).

마.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5항 및 제116조제1항제3호 신설).

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주요발언

임이자 위원(자유한국당)



이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잘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로자도 자기 편리한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왜 자꾸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가뜩이나 중소기업들 굉장히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일자리는요 결국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 그러면 정말 기업들이, 기업과 노동자들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신보라 위원(자유한국당)



그렇게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취지인 거지요. 소위원장님(임이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기본적으로 이 선택근로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서면 합의를 하기 전에 충분한 공감대 없이는 이런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김동철 위원(바른미래당)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기의 근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착취하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정 소득 이상이고 적어도 고소득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것을 갖췄으면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폭넓게 인정해 줘야지 계속 이렇게 법으로 강제해서 하면 저는 맞다고 안 봅니다. 정부가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SAMPLE

국토교통위원회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648
제 안 자 자유한국당 김상훈·김승희·윤영석·박인숙·김명연·윤재옥·문진국·정태옥·추경호·곽대훈 의원(10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9. 05. 27. 제안
2019. 05. 28. 상임위 회부

소위원회
2019. 07. 10. 상정
2019. 07. 16. 상정/축조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요건과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는 시기와 기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개별사안에서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제작자 그리고 관계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나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 문제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결함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판정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혼란을 겪는 동시에 자체 조사·분석 후에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결함이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하더라도 모호한 판단 시점과 기간 산정 때문에 추후에 결함 사실의 은폐·축소나 시정조치 지연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요건을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일(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사실을 통보 받은 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안 제31조제1항).

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사고 건수·비율, 무상수리 건수·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여야 하는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에 사고 또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율적 결함사실의 공개·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결함여부 판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주요발언

김상훈 위원(자유한국당)



여러 의원님들의 안, 특히 정부 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안을 보면 BMW 사태를 겪으면서 비난에 직면한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에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그래서 그게 업계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결함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자발적 리콜이 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부분도 업계에서 좀 감내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하소연이 저는 괜히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위원(더불어민주당)



결국은 남아 있는 부분의 핵심은 늑장리콜 벌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업계하고 조율이 안 되어 있는데 국토부는 거기에 대해서도 잠재적 결함 신고사항과 부품수급 애로와 같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또 벌칙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해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야당 위원님 말씀은 그 앞부분, 이미 업계와 조율된 것도 다시 다음번에 논의를 하자 얘기를 하시니까 좀 인식의 간극이 큰 것 같거든요.

이현재 위원(자유한국당)



지금 입증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BMW 사례를 보면서 정부가 뭐했냐, 국토부가 뭐했냐고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까 국토부는 전부 뒤로 물러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러서는 듯한 문구가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형사처벌을 하는데 자기가 입증을 잘못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한다 그게 맞느냐? 그런 경우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AMPLE

환경노동위원회

2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6343
제 안 자 **민주평화당** 정동영·김광수·김종회·유성엽·정인화·최경환(평)·황주홍 의원(7인)
바른미래당 박주현·장정숙·주승용 의원(3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1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8. 11. 05. 제안
2018. 11. 06. 상임위 회부
2019. 03. 13.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19. 07. 10. 상정/축조심사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은 저비용항공사(LCC : Low Cost Carrier)의 성장과 일본·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노선의 확대 및 내국인 항공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2010년 6천여만 명에 불과했던 연간 항공여객의 수가 2017년 1억 1천여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거점 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이 잇달아 반려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자본금 50억원 이상' 등 현행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추어 다소 엄격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령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청취 후 다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모호하고 자문회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어 면허 발급 또는 취소 여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의 우선 배분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을 통한 항공운송산업의 발전 및 지방공항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항공면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나.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예상 항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도록 면허 발급 요건을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가목).

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공항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국제항공 운수권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주요발언

조응천 위원(더불어민주당)



글쎄요, 이것을 비공개로 해서 자꾸 운영을 하면 뒷말이 나오고 거기서 잡음이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독임제에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 이것을 위원회로 돌리면서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면 이것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에요.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모든 정책은 정책실명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그래야 책임 있게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밀실에서 하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그래서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자유한국당)



후에 명단을 공개하고 어떤 위원은 어떤 의견이었는지 하는 것으로—회의록은 아니지만—그분의 입장은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Sample

기획재정위원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분석

가업상속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일정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SAMPLE

쟁점1. 가업상속공제 대상

구분	현행	송언석 의원안	정갑윤 의원안	이현재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심재철 의원안	최교일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
매출액 요건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조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조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조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조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2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피상속인 계속경영요건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	피상속인이 7년이상 계속하여 경영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

1) 매출액 요건 완화

① 타당성

- 가업상속 시 경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업상속에 따른 급격한 유동성 제약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고 해당 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독일 및 일본은 사전적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달리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기업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독일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② 문제점

- 매출규모가 큰 기업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면 '부의 대물림' 지원이라는 비판이 강화될 우려가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개정안의 매출액 요건인 1조원은 상위 330위의 큰 기업에 해당함.
- 현행 제도 하에서도 대다수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액 기준 완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검토 필요함.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계속경영의무 및 업종제한 등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추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수는 줄어듦.

2) 피상속인 계속경영요건 완화

① 타당성

- 가업상속공제 개선 필요사항으로 사전적 요건 중 1위 선정(46.4%)
- 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조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계속경영요건을 완화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문제점

- 가업상속 과정에서 전승되는 피상속인의 경영전문성·노하우·기술 등의 축적을 저해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실패로 기업이 폐업할 경우 창업 이후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고유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쟁점2. 가업상속공제 한도

피상속인 경영기간	현행	유승희 의원안	이진복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정갑윤 의원안	김규환 의원안	최교일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이현재 의원안	심재철 의원안
			명문장수기업 이외의 기업	명문장수 기업							
5년~6년	-	50	-	-	-	-	-	500	400	400	-
7년~10년	-	50	-	-	-	-	-	500	400	400	1,000
10년~15년	200	80	200	400	400	200	500	500	400	400	1,000
15년~20년	200	80	200	400	400	200	500	700	600	600	1,000
20년~25년	300	100	300	600	600	300	700	700	600	600	1,500
25년~30년	300	100	300	600	600	300	700	1,000	600	1,000	1,500
30년 이상	500	100	500	1,000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2,500

1) 공제한도 확대

① 타당성
-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주된 애로사항을 상속세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유동성 제약 완화, 기업 영속성 제고 가능함.
-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여 가업상속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② 문제점
-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공제한도를 늘리면 가업상속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쟁점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구분	현행	송언석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	심재철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김규환 의원안	이현재 의원안	정갑윤 의원안
사후관리 의무기간	10년	10년	7년	5년	5년	5년	5년	5년
가업용자산 처분 제한	10년 이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상속개시일 5년이내 10%)	10년 이내 가업용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상속개시일 5년이내 20%)	7년 이내 가업용자산의 30% 이상 처분 금지 (상속개시일 5년이내 20%)	5년 이내 가업용자산의 50% 이상 처분 금지	5년 이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상속개시일 2년이내 20%)	5년 이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5년 이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5년 이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1) 사후관리 의무기관 완화

① 타당성
- 다양한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받게 되는 경영상 제약 완화함.
- 가업상속공제의 장기간 사후관리의무기간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② 문제점
- 사후관리요건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한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을 두어 가업상속공제 혜택과 의무부담이 서로 반대급부로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용 자산 처분제한 완화

① 타당성
- 가업승계 후 기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

② 문제점
-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 간 과세불균형이 심화될 소지가 있음.

SAMPLE

기획재정위원회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분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라 내국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7%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공장개선·자동화 시설, ②첨단기술시설, ③공급망관리 시스템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투자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775억원, △2016년 4,873억원, △2017년 2,796억원.

구분	현행	김정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송갑석의원안	이원욱의원안	김두관의원안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	적용기한 2년연장 공제율 1년 한시적 상향	3년 공제율 상향	3년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3년 스마트공장시설 공제대상 추가	1년
세액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법시행후1년간 한시적 상향)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쟁점1.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상향

① 타당성
- 2019년 1/4분기의 실질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9.1% 감소하는 등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동 제도의 활용이 적은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② 문제점
- 현 세액공제율은 2018년 다른 투자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임.

쟁점2. 스마트공장 세액공제대상 추가

① 타당성
- 정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생산성이 30% 상승, 납기준수율 15.5% 상승, 불량률 43.5% 감소, 원가 15.9% 감소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매출 증대로 연결돼 기업당 평균 2.2명 고용 증가함.

② 문제점
- 현행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스마트공장 시설 대부분이 현행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시설 추가의 실익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SAMPLE

환경노동위원회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분석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구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3개월	1개월 이내
신보라 의원안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1개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년	-
추경호 의원안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1개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년	3개월 이내
송희경의원안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6개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년	-
김학용의원안 이은권의원안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3개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년	-
이진복의원안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2개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년	6개월 이내
박명재의원안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년	1년 이내
김관영의원안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년	6개월 이내
안상수의원안	-	6개월 이내
장병완의원안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1개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6개월	-
한정애의원안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

SAMPLE

쟁점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① 타당성

- 개정안과 같이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週)별 업무량 변동이 심한 업종[1]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종 등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률이 높아지고, 이로써 사업장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조정 및 불필요한 연장근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음.

외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2]

EU 지침	독 일	일 본	미국
- 4개월 이내 - 단체협약시 1년 이내	- 6개월 또는 24주 이내 - 단체협약시 12개월 이내	- 변형노동시간제 : 1개월, 1년, 1주 단위	- 26주 및 52주 단위(단협규정)

② 문제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특정기간에 장시간 근로를 집중화하여 근로자의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특정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어 기업의 인건비절약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위기간 확대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음.
- 결국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업무효율화 및 근로시간 단축효과, 장시간 근로의 집중화와 기업의 악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쟁점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① 타당성

- 다양한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이러한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성·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근로시간 단축 이후, 이러한 유연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3] 있고,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② 문제점

- 유연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임금감소의 우려도 있어 제도개선에 있어 다각적 측면의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정산기간이 종료되어야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되므로[4] 정산기간을 임금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SAMPLE

1. 예: 숙박시설 운영업(호텔·콘도 등), 오락관련 서비스업(놀이공원 등), 운송업(항공사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여행사 등), 계절관련 제조업(빙과류·전자제품 등) 등
2. 자료: 고용노동부
   주: 1년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국가 :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3. 300인 이상 기업(3,557개) 중 약 20.5%(730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300인 이상 기업실태 조사, '18.7월말 기준)
4.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주 단위로는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음.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는 일본도 플렉스타임제를 운영하면서 정산기간을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음.

B&B Report

SAMPLE

Ⅱ.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3. 법률안 비교 · 분석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강릉시 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거제군 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경주시 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0호 폐지법률안
		3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1호 폐지법률안
		3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3호 폐지법률안
		37.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6호 폐지법률안
		38.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9호 폐지법률안
		39.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4호 폐지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진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40.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2호 폐지법률안
		41.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9호 폐지법률안
		42.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호 폐지법률안
		43.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호 폐지법률안
		44.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7호 폐지법률안
		4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8호 폐지법률안
		4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9호 폐지법률안
		47.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0호 폐지법률안
		48.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호 폐지법률안
		49.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9호 폐지법률안
		50.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국립항공박물관법안
		5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5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67.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6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7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7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8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4.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SPECIAL

법제사법위원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021750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 03. 22.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 03. 22. 회부
2019. 03. 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019. 04. 0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2019. 07. 17. 상정/의결(수정가결)
2019. 07. 31.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19. 08. 02. 원안가결

제안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제1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현행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의제3항부터 제5항).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형태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안 제19조의4).

바.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제1항).

사.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항).

아.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도입함(안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주요발언

송기헌 위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렵기 때문에 10일 중에서 5일분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규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을 규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들도 애를 낳는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업이 조금 부담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들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출산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계속할 수 있어서 노동력 활용에도 훨씬 더 유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안반영폐기 법률안(34건)

- [20009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발의)
- [20006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24인발의)
- [20027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20015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등 34인발의)
- [2006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9인발의)
- [20067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발의)
- [2007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발의)
- [20067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발의)
- [20078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발의)
- [20083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발의)
- [20075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발의)
- [20080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발의)
- [20073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발의)
- [20074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발의)
- [20075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발의)
- [2008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3인발의)
- [20108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발의)
- [20108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발의)
- [20108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발의)
- [20117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1인발의)
- [20118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8인발의)
- [2011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발의)
- [20132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발의)
- [20115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발의)
- [20128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발의)
- [20135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발의)
- [20143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발의)
- [20146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4인발의)
- [2013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발의)
- [20153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발의)
- [20186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발의)
- [20124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발의)
- [20167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4인발의)
- [2014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4인발의)

SAMPL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021758
제 안 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 07. 12.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 07. 12. 회부
2019. 07. 3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19. 08. 02. 원안가결
2019. 08. 05. 정부이송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하고 있어 2019년 8월에 현행법이 만료될 예정인데,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5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포함함(안 제1조).

나. 적용범위에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포함함. 다만, 신산업 진출 기업에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 중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함(안 제2조·제4조 및 제26조의2).

다. 적용범위 확장에 맞추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동사업재편계획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제9조 및 제10조).

라.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마. 승인기업의 자진철회, 폐업 등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취소사유에 포함함(안 제13조).

바. 소규모합병·간이합병·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다만, 투기 등 악용소지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및 제39조).

아.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심의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자.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안 부칙).

대안반영폐기 법률안(2건)

- [201609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4인발의)
- [201829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6인발의)

SAMPLE

보건복지위원회

2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6862
제 안 자 **자유한국당** 윤종필·원유철·추경호·김성찬·박덕흠·임이자·김정훈·조훈현 의원(8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1인)
무소속 정태옥 의원(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8. 11. 28. 제안
2018. 11. 29. 상임위 회부
2019. 03. 13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19. 07. 16.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19. 07. 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 07. 18. 회부

제안이유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무분별한 섭취 또는 의약품과의 혼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의 이상사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4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주요발언

〈소위원회〉
- 이의 없음

관계자 의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하위 법령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하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범위에 소비자 주관적 판단에 의한 증상과 오남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들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이상 증상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공표할 필요가 있음
-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범위가 넓고 객관적인 정의가 어려우므로 이상사례의 범위를 「약사법」과 같이 중대한 사례(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등)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태료 수준도 「약사법」상 의약품에 대한 이상사례 보고에 준하여 결정하는 것이 두 법률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이상사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언론 등에서도 이상사례 관리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법률에 이상사례 보고·원인조사·분석 및 관리에 관한 방법·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며, 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중등도에 따라 보고의무를 구분하지 않고 약국개설자는 약학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상사례의 범위를 중대한 사례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SAMPLE

보건복지위원회

2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9572
제 안 자 자유한국당 윤종필·김명연·박덕흠·성일종·송석준·신용현·원유철·이철규·임이자·정우택 의원(9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오제세 의원(3인)
정의당 신용현 의원(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9. 04. 04. 제안
2019. 04. 05. 상임위 회부
2019. 07. 12.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19. 07. 16. 상정/의결(수정가결)

상임위원회
2019. 07. 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 07. 18. 회부

제안이유

현행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영업을 시작한 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우편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강을 하게 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관련 법령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교육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신설).

관계자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은 각기 다른 장점을 갖고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자의 신규 교육의 경우에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개설하여 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영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2014년 온라인 교육을 도입한 이후 온라인 교육 이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최초 교육은 강사와의 대면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집합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집합교육은 교육강사 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은 대리 수강을 방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충청북도**: 온라인 교육은 대리수강 등 불성실한 교육이수가 문제되고 있는바, 신규영업자만이라도 집합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초적인 식품위생법규와 영업자의 위생관리 준수 사항 등을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한제과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식품위생단체협의회: 대리교육 등으로 인해 위생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온라인 교육 도입 후 식품위생 위반 건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집합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식품산업협회**·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온라인교육 진행 시 본인인증 강화, 매차시별 체크 등을 통해 위생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집합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동 시간, 교통비, 식비 및 영업신고 지연 등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바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며, 집합교육의 경우 제한된 강사인력과 강사 능력에 따라 교육내용에 편차가 있는바 온라인 교육에 비하여 높은 교육 효과를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주요발언

〈소위원회〉
최도자 위원(바른미래당)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집합교육이 맞을 것 같아요. ……가서 교육받을 때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고 나면 상당히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감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



저도 집합교육 실시 의무화하는 것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집합교육만 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6월 13일 신규 축산물 영업자도 집합교육 외에 일반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 교육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교육만 하는 건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분석

이사의 충실의무 구체화·체계화 및 위반시 이득반환 등

쟁점1. 충실의무 구체화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적 규정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구체적 규정	없음.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또는 이사 간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① 타당성
- 현행 「상법」상 충실의무 규정이 그 일반적·추상적 입법태도로 인하여 선언적·주의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영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충실의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문화함으로써, 충실의무의 개념을 해석이 아닌 법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와 다른 충실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② 문제점
- 개정안은 이질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상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인데, ① 현재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관계에 관하여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동질설을 취하고 있어 명문화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쟁 발생이 예상되고, ②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경험칙적인 법규범인 영미법상 충실의무를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수용·편입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일반적인 충실의무 규정을 존치하고, 구체적인 충실의무를 별도로 신설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충실의무 규정을 존치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임.

쟁점2. 위반시 이득반환

개정안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무)
⑤ 이사 등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사 등은 그로 인하여 이사 등이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타당성
-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적인 손해배상보다 사전에 이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 개정안과 같이 이득반환의무를 지우게 되면,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므로, 사전 억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② 문제점
- 이득반환의무는 영미법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충실의무 구체화와 연계하여 그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탁법」 제43조 제3항[1] 은 충실의무를 포함한 신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자와 수탁관계에 있는 수탁자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는 부과되는 의무 및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1. 「신탁법」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SAMPLE

국토교통위원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분석

구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출퇴근 때
현행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	-
황주홍의원안 (10344)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인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를 삭제하여 유상운송을 전면금지	-
이찬열의원안 (10862)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가 되는 출퇴근시간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출퇴근 때"의 시간을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문진국의원안 (11658)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가 되는 출퇴근시간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출퇴근 때"의 시간을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퇴근 때'에서 제외

① 타당성

-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만 자가용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가 언제인지 해석에 맡길 수 밖에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어 보임 만약 현행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출퇴근 때"란 모호한 조항 대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1].

② 문제점

-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예외 정책에 대한 유지 또는 폐지는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유지라는 법익과 IT업계의 새로운 플랫폼사업 창출에 따른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그에 따른 승객의 편의 및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2]으로 보임.

1. 만약 현행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출퇴근 때"란 모호한 조항 대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이러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은 새로운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혁신 기업과 기존 시장 질서를 고수하며 기득권 유지를 원하는 전통 산업 사이의 주도권 싸움으로 볼 수도 있음.

CONFIDENCE

SAMPLE

B&B Report

SAMPLE

Ⅲ. 국회본회의

1. 상정 법률안 목록

상정 법률안 목록

* 7.1.부터 7.31.까지 본회의 상정 법률안 없음

국회 본회의(7.3) 3차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국회 본회의(7.4) 4차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국회 본회의(7.5) 5차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사임의 건
5.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궐선거
7.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
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국회 본회의(7.9) 6차

1.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국회 본회의(7.10) 7차

1. 경제에 관한 질문

국회 본회의(7.11) 8차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SAMPLE

P&B Report

별첨

1. 7월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2. 8월 본회의 통과 법률안 목록
3. 7월 국회 일정표
4. 용어해설

SAMPLE

7월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83)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1)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1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92)
	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
	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Preview

상임위원회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2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
	4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4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교육위원회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10.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월 본회의 통과 법률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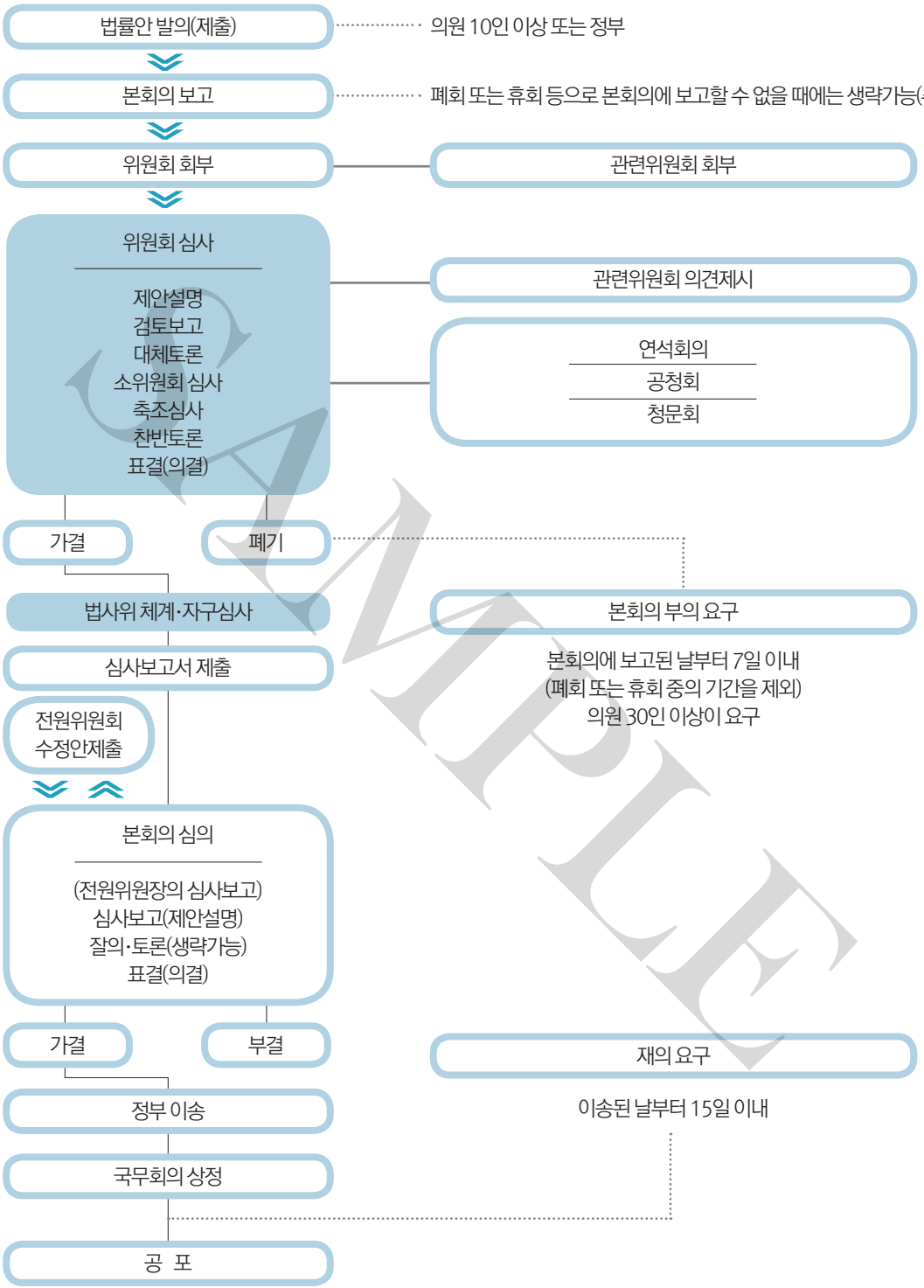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강릉시 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거제군 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경주시 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0호 폐지법률안
2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1호 폐지법률안
2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3호 폐지법률안
27.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6호 폐지법률안
28.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9호 폐지법률안
29.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2호 폐지법률안
30.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9호 폐지법률안
31.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호 폐지법률안
32.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호 폐지법률안
33.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7호 폐지법률안
34.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8호 폐지법률안
3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9호 폐지법률안
36.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0호 폐지법률안
37.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호 폐지법률안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국립항공박물관법안
40.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4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5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71. 서귀읍 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7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시설치와 군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85.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88. 양식산업발전법안
89. 어선안전조업법안
9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원주시 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0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6. 인천직할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SAMPLE

Policy & Business Report



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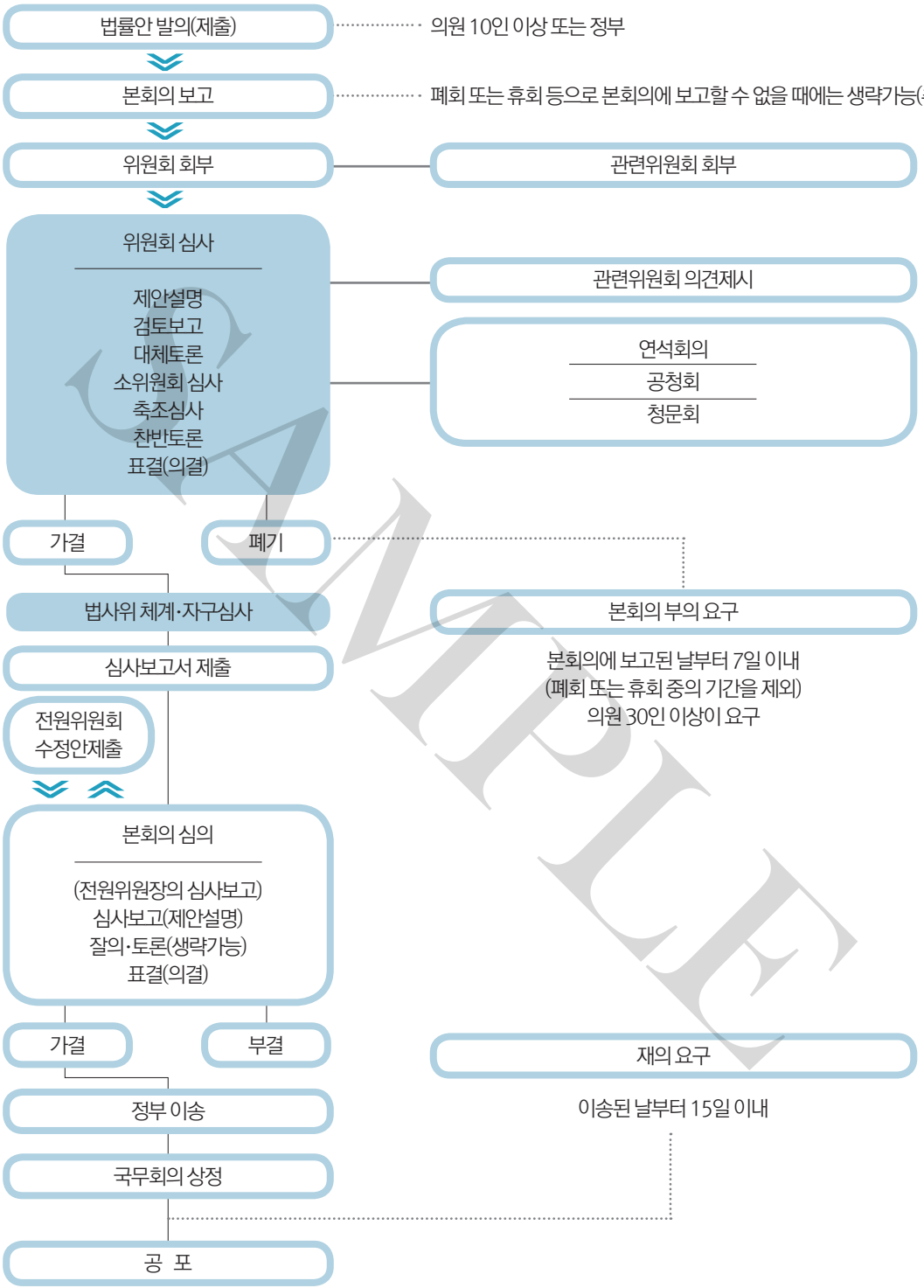
별첨 **7월 국회 일정표**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일자 / 위원회	1일	2일	3일	4일	5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31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국회본회의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	●					● 제 1소위 ●	● 제 2소위										●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	● 조세	●			●						
교육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 원자력							●	●	●			●	●			● 정보통신방송				
국방위원회		●									●												
행정안전위원회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	● 농협발전 ● 농림축산식품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특허			●		●	●	●				● 산업통상자원특허							
보건복지위원회											●	●											
환경노동위원회						●					● 고용노동 ●	● 환경		● 고용 ●									
국토교통위원회						●	● 국토	● 교통				● 교통											
외교통일위원회		●				●	●									●						●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SAMPLE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SAMPLE

SAMPLE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7, 8, 10-13, 15, 16층)

www.draju.com